

2019 연말정산 사내 안내문

2019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제신청을 누락하거나, 세금이 추징되는 부당공제신청이 없도록 안내문을 참조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고자료 입력기간 : 2020.01.21.(화) ~ 2020.01.29.(수)
2. 신고자료 제출기한 : 2020.01.21.(화) ~ 2020.01.30.(목)
3. 제출서류 :
 - (1)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기부금명세서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원본제출 요)
 -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자료를 모두 국세청 자동으로 업로드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외)
 - 서류제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① 국세청 수동 입력이나 기타자료를 입력한 경우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입력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해당서류)
 - ③ 인적공제에 장애인으로 입력한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수첩, 카드 등 사본)
 - (2)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 (3) 신규 입사자 :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 제출(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자료 제출시 p20. 참고하여 조회·발급하여 제출할 것**
 -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종전 회사 근무기간 포함)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임에 유의.
4. 제출방법 : 총무처 인사팀, 백양관 N206호

■ 확인사항

-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인해 기부금명세서상의 공제금액에 변동이 있는 교직원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작성·제출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것.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을 공제신청한 교직원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거주자간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교직원은 월세액·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유의사항 :

- 2019년도에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교직원은 의료비 공제자료 입력시 해당 항목을 **필수 입력하여야 함**. 「홈택스→My홈택스」 *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조회 및 출력하여 제출할 것.
※ 국세청에서 2020.01월 중순경에 제공할 계획임.(국세청 자료 조회 불가시 각 보험사에서 조회한 수령 내역을 첨부)

차 례

I. 2019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3
II. 소득·세액공제신청시 유의사항	5
III.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	7
IV. 소득·세액공제 안내	8
1. 인적공제	8
2. 연금보험료 공제	9
3. 특별소득공제	9
4. 그 밖의 소득공제	10
5. 세액감면	12
6. 세액공제	12
V. 제출서류 안내	16
VI.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20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20
2. 신규입사자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22
3.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23

I. 2019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18년	2019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이자율 -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이자율 - 연 1.8%	-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이자율 -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이자율 - 연 2.1% ※ 공포일(19.3.20)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주택요건 -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	- 주택요건 - 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이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공제대상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times (1 - \frac{\text{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text{사업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율 - 도서·공연 사용분: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추가공제한도 - 도서·공연 사용분 100만원 추가 - 소득공제 적용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 상품권, 월세액 등 - 소득공제 신청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바탕으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작성	- 공제율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추가공제한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추가 - 적용시기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19.7.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적용 제외대상 추가 - 면세점(사내출국장면세점, 가내면세점, 지정면세점 *'19.2.12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신청 보완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누락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신청 허용(영수증 등 증명서류 첨부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감면혜택 :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 '18.12.31	- 감면혜택 : 5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 '21.12.3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절차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 - 적용기한 : '18.12.31. - 청년의 경우 '21.12.31	- 대상 : 장애인 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등 추가 - 절차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 적용기한 : '21.12.3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 '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 감면 적용기한 연장 - '21.12.31.
자녀세액공제	- 공제 대상 - 6세 이상의 자녀 ※ 2018년 이전: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 자녀	- 공제 대상 조정 -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만 7세 이상 자녀는 2012.01.01. 이후 출생자임.

구 분	2018년	2019년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 200만원(출산 1회당)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의무(보험회사, 공제회 등)
기부금 세액공제	- 이월공제기간 : 5년 - 적용시기 : '08.01.0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공제율(16년~18년) 2천만원 이하 : 15% 2천만원 초과분 : 30%	- 이월공제기간 확대 : 10년 - 적용시기 : '13.01.0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외국납부세액공제	- 공제대상 세액 -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법인)세액 <추가>	- 조세조약 적용시 공제대상 세액 명확화 -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법인)세액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추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 '18.12.31.	적용기한 연장 : '21.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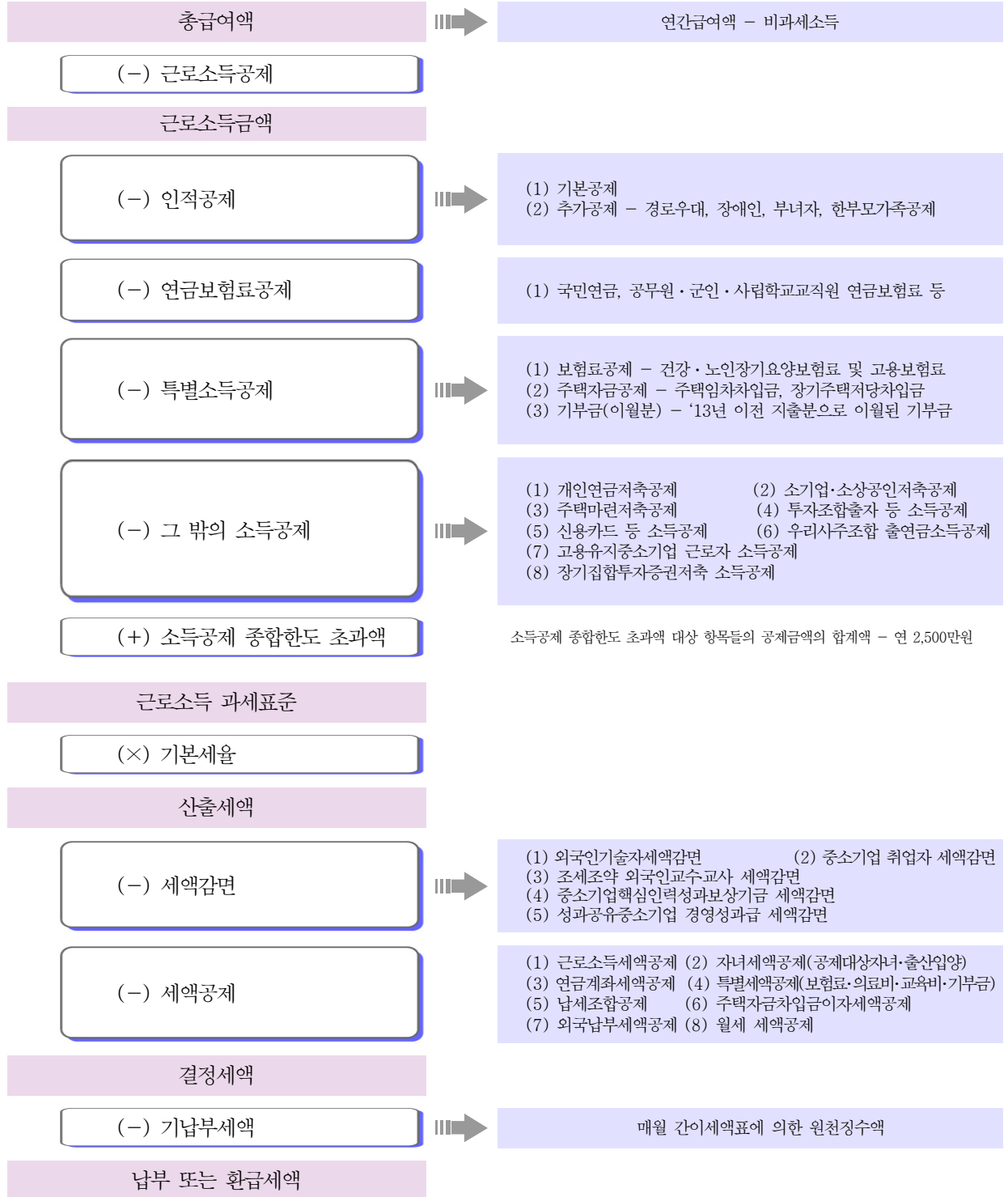
II.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국세청은 매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부당공제자로 적발되어 세무상 불이익 및 회사 이미지의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주요 확인사항
인적공제	○ 당해연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새로이 기본공제 신청하는 경우 중복공제 신청 여·부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를 필히 확인.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가족구성원간의 중복공제 불가. →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해외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등에 대해 인적공제 공제 신청불가 ○ 맞벌이 부부의 유의사항 - 부부가 자녀에 대한 중복으로 공제 신청불가. 또한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도 기본공제신청한 배우자만 공제 신청할 수 있음. - 배우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19년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신청 가능.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 단, 소득금액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신청 가능.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연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불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개인간 차입금의 경우 1개월) 이내 차입하지 않는 경우 공제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14년~'18년 취득분 : 4억원, '13년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공제 불가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주요 확인사항
주택마련저축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 연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공제 적용.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하여 공제 불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개인연금저축(연 72만원 한도)은 2000.12.31. 이전 가입분을 말함 ○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불가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의료비 지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 ○ <u>다른 가족이 기본공제신청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신청할 수 없음</u>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불가(대학원은 근로자본인만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체육시설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불가 ○ <u>동일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끼리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공제 받을 수 없음</u>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불가 ○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불가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불가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공제불가

Ⅲ.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



IV. 소득·세액공제 안내

1. 인적공제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기본공제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주1}	소득금액요건
		근로자 본인		1명당 : 150만원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배우자			-	-	
		기타 부양 가족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동거 ^{주2}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 ^{주3}	
		^{주1} 장애인의 경우에는 “ 나이제한 ”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2} 학업·취업·요양 등의 일시되거나 또는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거(따로 사는 경우)도 동거가족으로 봄 ^{주3}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등은 위탁아동 연장가능 ♣ “ 나이요건 ” 적용기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만 70세 이상	
	1999.01.01 이후		1959.12.31 이전		1949.12.31 이전		
	추가공제	🔵 다음의 하나를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각각의 추가공제를 적용					
		추가공제	공제금액	공제요건			
		경로우대자공제	1명당 100만원	만 70세(1949.12.31 이전 출생) 이상			
장애인공제		1명당 200만원	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는 장애아동 ^{주1} 포함),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주2}				
부녀자공제 ^{주3}		연 50만원	총급여액이 41,470,588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 배우자(소득 유·무 불문)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 공제 ^{주3}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주1} 비장애아동이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제21조①). ^{주2} 암, 중풍, 백혈병, 치매 등의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3}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를 적용)							

2. 연금보험료 공제

-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원천공제한 연금보험료의 경우 기재할 필요는 없음. **다만, 별도로 납입한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할 것.**
- 올해 다른 회사에서 이직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 전(前)회사에서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중(전)근무지의 연금보험료”란에 기재할 것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연금보험료 공제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주1}
	공무원연금보험료 등	전액	
	^{주1} 2019.01.01 ~ 12.31일까지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가능)		

3. 특별소득공제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보험료 공제	● 올해 다른 회사에서 이직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 전(前)회사에서 납부한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는 “중(전)근무지”란에 구분하여 기재할 것.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건강·노인장기·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 근무기간 중에 별도로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할 것.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주1})인 근로자 본인이 <u>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u>을 임차하기 위해 아래의 공제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전세보증금 등)의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금융기관 차입금	개인간 차입금
		공제요건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주2}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주2}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2.1%)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공제금액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주1}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금·보증금 등을 차입한 경우를 말함. ^{주2}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차입금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허용.(‘14.02.21 이후분부터 적용) ● 임대차계약을 연장(갱신)하는 경우 : 전세계약 연장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 ●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 이사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주택 자금 공 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 제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인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구분		2013년 이전 차입한 차입금	'14년~'18년 차입한 차입금	'19년 이후 차입금
		공 제 요 건	주 택	●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일 것 ● 국민주택규모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로서, 연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이하 일 것	●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일 것 ●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일 것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 일 것	●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일 것 ●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일 것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 일 것
			차 입 금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03.12.31 이전 차입금 및 '15.02.01이후 차입금(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소유권(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일 것.		
		 공제한도				
		구 분		상환기간 또는 상환유형		공제한도
		2015.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타 대출		연 1,500만원 연 5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300만원
		'12.01.01~'14.12.31 차입금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원
				기타 대출		연 500만원
		2011.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		10년 이상 15년 미만('03.12.31이전 차입금만)		연 600만원
				15년 이상 30년 미만		연 1,000만원
				30년 이상		연 1,500만원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 주택입주권)로서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4. 그 밖의 소득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기재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개인연금저축공제	●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40%(공제한도 : 200만원~5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2016.01.01. 이후 가입자 중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때에만 공제가능. ※※ 2019.01.01. 이후 가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하여 공제금액 계산함. --> 공제한도내 납입금액 × (1-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말 현재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요건	납입한도	공제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주1} 의 세대주	연 240만원	납입금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청약저축				
	^{주1} '09.12.31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 1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아래의 공제율(10% ~ 100%)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 상			공제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 벤처기업투자신탁 · 사모펀드(PEF)			10%	
	● 벤처조합 · 벤처 기업 등	'16년~'17년 투자분	1,5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	
			5,000만원 초과	30%	
		'18년 투자분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나이 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형제자매 등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구분		공제금액	공제한도	
	①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25%) × 공제율 (15%,30%,40%)^{주1} ^{주1}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 40%	연 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 이하자 :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 : 200만원)	
	② 추가공제	㉠도서공연비 등*	작은금액 【한도초과금액, 도서공연비 × 30%】	연 100만원	
		㉡전통시장	작은금액 【(한도초과금액 - ㉠), 전통시장사용분 × 40%】	연 100만원	
		㉢대중교통	작은금액 【(한도초과금액 - ㉠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연 100만원	
	※ 도서공연비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적용.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연 1,000만원 한도) - 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입한 금액(납입한도 6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공제요건		공제금액		
	●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5. 세액감면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연구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2년간 근로소득세의 50% 세액감면 적용('19.01.01. 이후 입사자는 5년간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후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		
	구 분	청년	청년 이외의 자
	감면대상자	만 34세 이하 청년^{주1}	- 만 60세 이상 자 - 장애인^{주2} - 경력단절 여성('17.01.01 이후 재취업부터)
	감면세액	90% 세액감면(150만원 한도)	70% 세액감면(150만원 한도)* * 14.01.01~'15.12.31 취업자는 50% 감면.
	감면기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주1}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나이에서 군복무기간을 뺀 연령으로 나이계산. ^{주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포함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원 세액감면	조세조약의 교직원 면제조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가된 교육기관(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초청되어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세액의 100% 면세.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수령 에대한소득세감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내일채움 공제)에 2021년 12월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소득세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성과공유중소기업 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6. 세액공제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세 액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구 분		세액공제액		
		공제대상 자녀		●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1명당 15만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30만원 + (자녀수 - 2명) × 30만원		
		출산·입양자녀		● 출산·입양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 만 7세 이상 자녀는 2012.01.01.이후 출생자임.				
공 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구 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 연금계좌	퇴직연금	DC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	연 700만원 ^{주1}	한도 내 납입액 × 12%(15%)
			연금저축			
^{주1}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1억2천만원 초과자는 연300만원)을 한도로 함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세 액 공 제	특 별 세 액 공 제	보 험 료	●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공제요건			세액공제액
			보장성보험료 ^{주1}	● 근로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보험료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2%	
			장애인전용보험료 ^{주2}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5%	
			^{주1}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된 보험(종신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주2}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의 료 비	●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 지출한 다음의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적용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제외)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① 난임시술비	● 치료·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 ●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 난임시술비 ●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등) 구입비는 제외	한도없음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난임 시술비 20%)	
		② 근로자 본인 만 65세 이상자 ^{주1}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주2}		연 700만원		
		③ 그 밖의 부양가족				
^{주1} 만 65세 이상자는 1954.12.31. 이전 출생자를 말함. ^{주2} 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자로 등록·재등록된자를 말함. ※ 공제대상금액 = ① + ② + Min{ (③ - 실손의료보험금 - 총급여액×3%), 연 700만원}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세 액 공 제 제	특 별 세 액 공 제	교육비	●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일 반 교육비	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도서구입비 포함) ●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 중·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 초·중·고생 체험학습비(1명당 30만원 한도) ●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및 대학생의 등록금, 입학금 등 ● 우리나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해당하는 해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국외교육비 ^{주1} ● 다음의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에 한하여 적용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3}	1명당 3백만원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초·중·고등학생		1명당 9백만원	
				대학생		전액공제	
				근로자본인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 ^{주2}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공제	
			^{주1} 연말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유학 중인 자녀의 국외교육비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음.				
			구분		국외교육비 공제 여부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가능		
			중학생 이하인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교육비 공제가능.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거나, 부모 모두와 출국하여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녀가 유학중인 경우		
			^{주2}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단,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및 소득금액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주3} 근로자 본인이 대학교 재학 중에 학자금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로서 취업이후 동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공제신청할 것.				
			구분		교육비 신청시기 및 공제신청 가능 여부		
			2016.12.31. 이전 학자금 대출분		●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 공제신청 불가 ●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공제신청 가능		
			2017.01.01. 이후 학자금 대출분		● 취업 이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임(재학 중에 동 학자금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교육비 신청 불가).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세 액 공 제	특 별 세 액 공 제	기부금	●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구분		기부 코드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① 정치자금기부금		20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내 기부금× 15%(25%,30%) ^{주1}
			② 법정기부금		10	(근로소득금액 - ①)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④ 지 정 기부금	종교단체외	40	소득금액 × 10% + Min [소득금액×20%, 종교단체외 기부금]	
				종교단체	41	*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종교단체기부금의 공제금액은 소득금액의 10% 를 초과할 수 없음.	
			주1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 : 25%. ▶ 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단, '16년~'18년 이월기부금은 2천만원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14년~'15년 이월기부금은 3천만원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적용)				
			공 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의 산출세액의 5%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해외 파견 등으로 파견국가에 납부한 세액(외국납부세액) ^{주1} 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주1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주2} * 국외근로 제공대가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임 주2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면제 또는 세액면제·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하므로 아래와 같이 한도액을 계산함. = 산출세액 × $\frac{\text{국외원천소득금액} - (\text{세액면제} \cdot \text{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 \times \text{감면비율})}{\text{근로소득금액}}$					
	월 세 세 액 공 제	월세 세액공제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공제요건			세액공제액				
●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자일 것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 10%(12%*)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2%				

V. 제출서류 안내

항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근로자 본인	이중근무자	• 근무지(변동)신고서 •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종된 근무지 회사	
	재취업자	•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직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기부금명세서	전 직장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인적공제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부24 (www.gov.kr) 또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일시퇴거자	•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 • 본래의 주소지 및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일시퇴거 사유별 재학·요양·재직증명서 등	관련기관	
	입양자	• 입양증명서, 입양관계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정부24 (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장애 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정부24 (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등예우 등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등	상이증명서	국가보훈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해당 의료기관

항 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주 택 자 금 공 제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 택 임 차 차 입 금	금융기관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개인간 (거주자간)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근로자 본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상환증명서류				
	연장(갱신) 또는 이사의 경우	• 연장(갱신) 또는 이사 전 임대차계약서	근로자 본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 격확인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 리미(www.realtyprice.kr:447) 또는 시·군·구청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또는 상환기간 연장 등에 한함)		해당 금융기관			
- 분양권계약서 사본(분양권에 한함)		본인보관 또는 분양회사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소기업·중소기업 공제부금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	
투자조합출자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 및 증권투자위탁회사 (벤처기업 투자 등은 중소기업청)		
주택마련저축	•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이 직접 작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해당 금융기관	○	
	• 현금영수증 연간사용금액확인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항 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연금저축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보험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해당 금융기관	○
	장애인전용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의료비 세액공제	필수서류	•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
	병원·약국 등에 지출한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해당 의료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해당 요양기관	
	의료용구 구입· 임차비용	• 의료비영수증(의료기기명이 기재될 것)	의료기기 판매점	
		• 의사 등 처방전	해당 의료기관	△ (의무제출 아님)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 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안경점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것)	판매자	
	난임시술비	• 난임시술 의료비 지출영수증	해당 의료기관	
	산후조리원비	• 산후조리원이 발급하는 영수증	산후조리원	○
교육비 세액공제	국내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어린이집·유치원)	해당 교육기관	○
		• 교육비납입영수증(학원)	해당 학원	
		• 교육비납입증명서(초·중·고·대학교)	해당 교육기관	○
		• 교육비납입증명서(교복구입비)	해당 판매점	△
		• 방과후학교 수업용도서구입증명서 (학교외 구입분)	해당 교육기관	
		• 학자금대출상환 교육비납입영수증	한국장학재단 등	○
	장애인재활 특수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해당 특수교육기관	○
		•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입증 서류		
	국외교육비	• 교육비납입영수증	해당 교육기관	
		• 유학중인 자녀가 유치원·초·중·고학 생인 경우(국내근무자에 한함)		
		－ 국외유학인정서	국제교육원 등	
		－ 유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 실증명서	재외공관	

항 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기부금공제	필수서류	• 기부금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정치자금	• 정치자금 · 후원금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 기부금확인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 을 받은 단체의 장, 자원봉사센 터장	△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해당 종교단체	△
		•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 설립허가증		
	이외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해당 기부단체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본인이 직접작성	
	•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해당 외국국가에서 발행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본인이 직접작성	
	• 미분양주택확인서		시·군·구 또는 분양회사	
	• 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매매계약서 사본		근로자 본인	
	•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자 본인	
	•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서류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근로자 본인	

※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증명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아래의 자료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등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VI.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않는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여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다. 단, 비회원인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로그인 → 홈택스 메뉴 중 [조회/발급]을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함.



아래의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② 소득·세액공제자료 내려받기 또는 인쇄

아래의 각각의 소득·세액공제항목을 클릭하여 지출(사용)금액이 조회하여, 「한번에 내려받기」를 하거나 「한번에 인쇄하기」를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한번에 내려받기

한번에 인쇄하기

제공동의현황

귀속년도

2019년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의료비신고

영수증발급기관조회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1,351,540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1,536,300	보험료 (Insurance) 8,669,430	의료비 (Medical Expenses) 3,086,636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0	신용카드 (Credit Card) 10,681,852	직불카드 (Debit Card) 9,276,900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6,746,332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Pension Savings) 0	주택자금 (Housing Funds) 0	주택미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Long-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 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0	기부금 (Donation) 0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 기본내역(연간기부금액공제항목)

기부자 사업자번호

단체명

유형

선택 : 0 건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공제 대상으로 선택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를 다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PDF 파일을 열수 없는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Adobe Acrobat Reader 다운로드 : [Windows용 / Mac용](#)

[참고2] PDF파일의 전문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에 자주고립 다운로드 : [Windows용 / Mac용](#)

■ 단, 리눅스는 전문확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를 먼저 설치한 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여야 정상작동 합니다.

· 내려받기 종류를 선택하세요.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직업훈련비/교육구입비/학자금대출
☒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
☒ 현금영수증

☐ 장기집합투자증권
☐ 장기주택저축
☐ 주택자금
☐ 주택미련저축
☐ 학원·학비 등 기타 이자상환액
☐ (개인)연금저축/직업연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기부금

☐ 문서별기입호(비밀번호)설정

내려받기

인쇄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바랍니다.

많은 경우,기부금단체(종교단체,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적을 받음

자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나 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익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상금액에 포함)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21

2. 신규입사자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2019년도 중 입사한 교직원의 경우 아래 테두리박스와 같이 근무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월의 체크표시를 해제하고,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월의 체크 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해당 소득·세액공제항목의 지출내역을 조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 중 재취업한 중도입사자는 전직장의 근무개월수를 포함하여 체크할 것.

<예시 : 2019년 7월 1일에 신규입사한 경우(전직장 근무경험 없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한번에 내려받기

한번에 인쇄하기

제공동의현황

귀속연도

2019년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의료비신고

영수증발급기관조회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1,116,820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1,536,300

보험료

(Insurance)

4,133,592

의료비

(Medical Expenses)

1,937,700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0

신용카드

(Credit Card)

4,154,265

직불카드

(Debit Card)

3,522,780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4,395,554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주택미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Long-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0

기부금

(Donation)

0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기부금 기본내역(연간기부금액공제항목)

기부자 사업자번호

단체명

선택 : 0 건

조회된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공제 대상으로 선택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를 다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PDF 파일을 열수 없는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Adobe Acrobat Reader 다운로드 : [Windows용](#) / [Mac용](#)

[참고2] PDF 파일의 장본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장본확인 프로그램 다운로드 : [Windows용](#) / [Mac용](#)

■ 단, 리눅스는 장본확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를 먼저 설치한 후 장본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정상작동 합니다.

· 내려받기 종류를 선택하세요.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직업훈련비/교육구입비/학자금대출

☒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

☒ 현금영수증

☐ 문서열기없음(비밀번호)설정

☐ 장기집합투자증권

☐ 장기주택저축

☐ 주택자금

☐ 주택미련저축

☐ 복원 안되는 연세 이자상환액

☐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기부금

내려받기

닫기

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기 바랍니다.

않은 경우,기부금단체(종교단체,

청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직

발급 받음

주자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

금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나

과제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스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의 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으로 조회됩니다.

22

3.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부양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전산상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로서 부양가족 명의의 본인인증수단(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이 있는 경우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본인인증신청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안내

- 공인인증서 로그인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 해제
- 회사제출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근로자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제공동의 필요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삭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 소득 · 세액공제 조회/발급(사업소득자)

영수증 발급기관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를 제출·조회하는 화면

자료제공동의 신청 동의방법

▶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 본인인증 신청
(제공자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아이핀 필요)
- 미성년자녀 신청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신청
(조회자와 제공자 모두 신청 가능)
- 팩스신청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팩스 전송)
- 세무서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1)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본인인증신청」을 클릭하여 아래의 화면을 통해 신청정보 입력 및 자료동의신청하고,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으로 신청합니다.

소득 ·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제공동의현황조회 간소화 자료조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클릭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 [미성년자녀 신청] 클릭

본인인증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전화에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미성년자녀 신청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온라인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팩스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팩스번호 : 1544-7020

세무서방문 신청

[항부서류]
본인신청 : 신분증, 대리인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인미러]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 본인인증수단

● 자료 조회자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

성명 ※ 한글을 공백없이 최대 15자, 영문은 공백포함하여 최대 30자까지 입력가능합니다.

● 자료 제공자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성명 ※ 한글을 공백없이 최대 15자, 영문은 공백포함하여 최대 30자까지 입력가능합니다.

관계 은(는) 의 입니다.

동의범위 2019년 부터 이후연도 자료

☐ 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가)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 미성년자인 자녀(만 19세 미만)인 경우

만 19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아래와 같이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상기 화면에서 「미성년자녀의 경우」의 바로가기기를 클릭하여 아래의 화면을 통해 자료동의신청을 합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제공동의원활조회 간소화 자료조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클릭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 **【미성년자녀 신청】** 클릭

본인인증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폰, 휴대전화에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미성년자녀 신청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온라인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 이내 출생한 자녀 등)

팩스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 이내 출생한 자녀 등)

세무서방문 신청
 【첨부서류】
 본인신청 : 신분증
 대리인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인이란?】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자료제공자

본인인증수단
 자료 조회자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
 성명 ※ 한자 02
 자료 제공자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성명 ※ 한자 02
 관계
 동의범위 201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귀속년도 2019년
 주민등록번호 -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안내>
 1.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는 부양가족 본인의 각종 금융정보 및 의료비·교육비 납입금액 자료를 제3자인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 신청하는 절차로서,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는 실제 소득·세액공제 가능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4.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성년이 된 자녀('99년 출생)는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 자료제공 동의가 가능하지만, 성년 자녀는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6. '00년 출생자녀는 '19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성년이 되었으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특히, 군입대에정인 자녀가 있으신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여야 군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닫기 신청하기

단,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국세청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군입대 예정인 자녀의 경우 미리 자료제공동의 신청(본인인증수단, 온라인신청, 팩스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부양가족의 본인 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본인인증수단(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이, 자료제공자(부양가족)와 자료조회자(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방법을 선택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간소화 자료 조회 : **매일 08:00~24:00**
- [영수증 발급기관] 공제자료 제출 : **1월1일~7일 08:00~22:00**
-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8:00~24:00**

이용절차 안내

- 01 공인인증서 로그인**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
- 02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신청
- 03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
※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조회
- 0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 해제
- 05 회사제출**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근로자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제공동의 필요**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삭제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
- 소득 · 세액공제 조회/발급(사업소득자) >

자료제공동의 신청

동의방법

▶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 본인인증 신청
(제공자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아이폰 필요) >
- 미성년자녀 신청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신청
(조회자와 제공자 모두 신청 가능) >
- 팩스신청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팩스 전송) >
- 세무서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영수증 발급기관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를 **제출·조회하는 화면**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절차 요약>

신청방법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 여부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팩스신청	자료제공동의에 필요한 신청정보 입력후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클릭 후 출력한 신청서,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을 팩스(팩스번호 1544-7020)로 제출.
세무서 방문신청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방문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 위임장을 첨부)

1) 「온라인 신청」 방법을 선택한 경우

「온라인 신청」을 클릭한 후 자료조회자 및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 → 신청하기 → 파일찾기(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첨부) → 첨부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첨부서류 제출시 (근로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를 PDF 또는 이미지파일(PEG 등)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

▶ 자료 조화자 (자료를 조화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자료 제공자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성명	
관계	은(는) 의 선택
동의범위	2019년 ▼ 부터 이후연도 자료 ▼
연락처	- - (SMS 수신용 연락처)

▶ 첨부서류

서식명	파일찾기
1. 부양가족의 신분증(필수항목)	파일찾기
2. 가족관계 증명서(필수항목)	파일찾기
3. 위임장(필수항목)	파일찾기

2) 「팩스 신청」 방법을 선택한 경우

「팩스 신청」를 클릭한 후 아래의 화면의 자료제공동의에 필요한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를 클릭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를 출력한 후에 출력한 신청서에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을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합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팩스신청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팩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 (신청서 제출 팩스번호 1544-7020)

자료 조회자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

성명

※ 한글을 공백없이 최대 15자, 영문은 공백포함하여 최대 30자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자료 제공자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성명

※ 한글을 공백없이 최대 15자, 영문은 공백포함하여 최대 30자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 (SMS 수신용 연락처)

동의범위

제출신분증

관계 의 선택

선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

발급신청 확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가)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이전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접수번호 : 20181217-09559744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

본인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가)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동의범위 : 2018년 부터 이후연도 자료)

본인의 기존 신청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모두 취소하고
본 신청내역으로 변경함에 동의합니다.

2018.12.17 (인 또는 서명)

신주연의 [주민등록증] 사본 부착 위치
(신분증을 조금 흐리게 복사하여 일면만 부착)

[제외 필자]
신분증 사본 부착 → 적인 또는 서명 → FAX전송(1544-7020)

「세무서방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제공동의신청서, 위임장을 출력하여 작성한 후, 제공동의서, 위임장(자료제공자(부양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함),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